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60

발의연월일: 2025. 6. 12.

발 의 자:김민전・인요한・강선영

이종배 • 서천호 • 김상훈

배준영 • 박충권 • 조배숙

조정훈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회는 상임위원장 직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음. 이는 13대 국회 이후로 자리 잡은 관행으로, 교섭단체 간 협의 를 강조하고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에 비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음. 그 결과,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배분된 상임 위원장 직위의 수가 정해지더라도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교섭단체 가 맡을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원(院) 구성이 지연되어 국회 본연 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정당별 배정지수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제도화 함으로써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관행 에 의존한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1조의2신설 등).

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2항 중 "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"을 "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장 후보"로 한다.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1조의2(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 등) ① 상임위원장(예산결산특별위 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직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.
  - 1.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정당별 배정지수가 큰 정당부터 상임 위원장 직위의 배분이 종료될 때까지 순서대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한다.

정당별 배정지수 = 정당별 소속 의원 수 ÷ (1 + 정당별 배분받은 상임위원장 직위의 수)

2.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정당별 배정지수가 같은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정당이 먼저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한다. 이 경우소속 의원 수가 같은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의장이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(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협의하여 순서를 정한다.

- ②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은 제1항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 상임위원장 직위에 대하여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해당 상임위원(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) 중에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정한다.
- ③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되, 해당 상임위원장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은 지체 없이 제2항에따라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정하여야 한다.

제45조제4항 중 "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"을 "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햀 개 정 안 제41조(상임위원장) ① (생 략) 제41조(상임위원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 ② -----제41조의2제2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장 후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 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 에서 선거한다. ③ ~ ⑤ (생 략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41조의2(상임위원장 직위의 배 분 등) ① 상임위원장(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직위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 다. 1.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정당별 배정지수가 큰 정당 부터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 분이 종료될 때까지 순서대 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 한다. 정당별 소속 의원 수 ÷ 정 당 별 = ( 1 + 정당별 배분받은 상임위 배정지수 원장 직위의 수 )

- 2.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정당별 배정지수가 같은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정당이 먼저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한다. 이 경우 소속 의원수가 같은 정당이 둘 이상인때에는 의장이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(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협의하여 순서를 정한다.
- ②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은 제1항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 된 상임위원장 직위에 대하여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(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) 중에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정한다.
- ③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되, 해당 상임위원장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은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정하여야 한다.